

인동촌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8.04]**, 주택관리번호 **[2023980085]**

■ 건설위치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68-21번지

■ 공급대상 : 통합공공임대주택 1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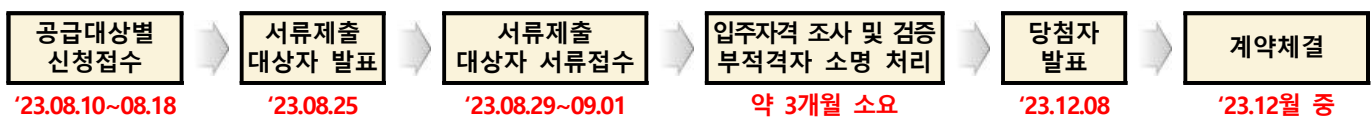
총건설호수	전용 29㎡	전용 36㎡
12	3	9

- 공사 콜센터(350-0300)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신청 관련 사항에 대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 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0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 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안 내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8.04**이며, 이는 입주자격(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3980085**이며, 공고문은 공사 홈페이지 (<https://www.dudc.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 공급대상별 입주자격 및 신청요건, 일정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해당 일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8.0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은 무주택자)으로서 자산·소득 기준 및 입주자격 구분별 입주자격을 충족한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세대원수에 따라 공급합니다. 다만,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는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통합,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 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 임대조건

- ①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2022.02.28. 개정**」을 근거로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통해 산정됨에 따라, 동일 주택형 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공급대상별 세부 입주자격, 임대조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② 갭신계약 시 임대조건은 입주자 세대구성원의 자산, 소득변동 등에 따라 변경 또는 할증 적용될 수 있습니다.
- ③ 임대조건의 변경(임대조건의 상한, 증액, 할증)은 공급신청(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및 갭신계약(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정한 시점 기준) 시점의 입주자 소득수준 등을 확인하여 해당시점에 한하여 적용하며, 임대차기간 중에 소득변경 등에 따라 변경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임대기간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최대 거주기간(30년) 제한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세대구성원 수에 따라 최대(최소) 신청가능 면적이 제한됩니다. 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가능면적에 부합하지 않는 청약신청자의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검증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은 무주택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분리 배우자세대 포함)을 대상으로 조회
- (소득 및 자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분리 배우자세대 포함)을 대상으로 조회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조회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별 '해당세대'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

■ 기타사항

- ① 신청접수는 **인터넷 대구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www.dudc.or.kr>)**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② 주택신청은 신청접수일 마감시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③ 상기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중 철거민(기존거주자)는 사업주체 또는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하며, 해당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접수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1. 공급대상

■ 공급형별 공급호수

공급 형별	공급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호
	계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주거 전용	주거공용		합계	
					벽제	계단실,복도		
총계	12	1	11					
29A형	3	-	3	29.5305	2.4826	13.8199	45.8330	204,304 404
36A형	8	-	8	36.9899	3.2247	17.3108	57.5254	201~202 301~303 401~403
36B형 (철거민)	1	1	-	36.9899	3.2247	17.3108	57.5254	203

※ 구조 및 난방 : 벽식구조 · 개별난방 / 주차대수 : 지상주차장 12대

※ 36B는 철거민(기존거주자) 우선공급 주택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거약자용으로 설계된 주택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입니다.

- 입주예정일은 2023년 12월이고 이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해당 주택은 임대료 외 세대별로 관리비가 부과되며 관리비는 주거전용 및 주거공용 면적의 관리비까지 추가로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사전에 인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3배수를 예비당첨자로 선정**(경쟁시 순위→추첨) 및 순위 부여(경쟁시 순위→추첨)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주택 발생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 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공급대상 주택이 남는 경우에는 해당 구 협의를 거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공급대상 계층 예비당첨자에게 **시설의 변경 없이 최초 공급형 및 공급계층의 시설 상태로 우선공급**합니다.
-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거주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임대료를 할증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자격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저장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가능 전용면적】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
일반 가구	~ 30m ²	20m ² ~ 40m ²	30m ² ~ 50m ²	40m ² ~
중증장애인 가구	~ 50m ²	~ 50m ²		

- 일반 가구는 세대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없는 신청가구를 말하며, 중증장애인 가구는 세대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는 신청가구를 의미합니다.
-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계약자 1명을 정하여 당사자 두 명이 함께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공급신청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 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한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격 구분별 배정호수

주택 신청은 반드시 주택형 및 입주자격 구분별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은 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공급 기간별 마감시간 전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공급형별	계	우선공급	일반공급		
		철거민 등 ¹⁾	계	① 청년	②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총계	12	1	11	8	3
29A	3	·		3	·
36A	8	·		5	3
36B (철거민)	1	1	·	·	·

• 안내사항

- 철거민(기존거주자)은 사업주체 또는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하며, 해당 우선공급 접수기간에 본인이 접수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 우선공급 신청자 간 경쟁 시에는 가점제 방식(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일반공급 주택의 신청자 간 경쟁 시에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공급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동일한 입주자격 구분별 주택형의 일반공급 신청자로도 자동 신청(접수번호 2개 부여) 되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우선공급 신청자(철거민)은 구청 협의 후, 일반공급의 「청년 계층」으로 자동 청약신청되어 접수번호가 부여됩니다.

- 청약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그 중 일부를 서류제출대상자(심사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신청자 중 일부는 ①우선공급 심사대상으로, 일부는 ②일반공급 심사대상으로, 일부는 ③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심사대상으로 선정(또는 모두 ④낙첨)될 수 있으며, 적격 대상자인 경우 각 입주자격 구분별 당첨자 선정방식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단,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심사대상으로 동시 선정된 자는 당첨자 결정시 우선공급에서 낙첨되는 경우 일반공급 심사자와 경쟁하여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대상호수는 우선공급 신청 미달로 인한 잔여호수의 일반공급 전환으로 증가될 수 있으며, 1)의 잔여호수는 구청 협의 후, 일반공급의 「청년 계층」으로 전환하여 일반공급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일반공급 신청자격은 「5.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임대조건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은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입주자 월평균소득의 비율에 따라 시세 대비 임대 조건을 차등화(35~90%) 적용하여, 동일 공급형 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월평균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모든 소득금액은 세전금액을 의미)

■ '23년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

[단위 : 원/월]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이하)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기타 소득구간			
	~30%	~50%	~70%	~100%	~110%	~120%	~130%	~150%	~160%	~170%	~180%	~190%
1인	623,368	1,038,946	1,454,524	2,077,892	2,285,681	2,493,470	2,701,260	3,116,838	3,324,627	3,532,416	3,740,206	3,947,995
2인	1,036,847	1,728,078	2,419,309	3,456,155	3,801,771	4,147,386	4,493,002	5,184,233	5,529,848	5,875,464	6,221,079	6,566,695
3인	1,330,445	2,217,408	3,104,371	4,434,816	4,878,298	5,321,779	5,765,261	6,652,224	7,095,706	7,539,187	7,982,669	8,426,150
4인	1,620,289	2,700,482	3,780,675	5,400,964	5,941,060	6,481,157	7,021,253	8,101,446	8,641,542	9,181,639	9,721,735	10,261,832
5인	1,899,206	3,165,344	4,431,482	6,330,688	6,963,757	7,596,826	8,229,894	9,496,032	10,129,101	10,762,170	11,395,238	12,028,307
6인	2,168,394	3,613,991	5,059,587	7,227,981	7,950,779	8,673,577	9,396,375	10,841,972	11,564,770	12,287,568	13,010,366	13,733,164
7인	2,432,255	4,053,758	5,675,261	8,107,515	8,918,267	9,729,018	10,539,770	12,161,273	12,972,024	13,782,776	14,593,527	15,404,279
8인	2,696,115	4,493,525	6,290,934	8,987,049	9,885,754	10,784,459	11,683,164	13,480,574	14,379,278	15,277,983	16,176,688	17,075,393

- 8인을 초과하는 가구의 기준소득은 1인 증가 시마다, **879,534원씩 증가**합니다.
- (예시)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수가 3인 가구이면서 월평균소득이 4,000,000원인 경우 : 4구간 임대조건 적용

■ 공급형 · 구간별 임대조건

- 공급형 · 구간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8.04) 현재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 소득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으며,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세전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4.입주자격」 중 소득기준 및 산정방법(p.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형 · 구간별 임대조건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입주자의 경우에는 구간별 임대조건을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해당 시점의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조건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입주자 중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입주자의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제2호 가목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3.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임대조건 상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입주자격 중】

- ①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
- ②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 ③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안전지원대상자
-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연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연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① 【29A】 구간별 임대조건

[단위 : 원/월]

구간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10%)	잔금(90%)					
1구간	5,635,000	563,500	5,071,500	54,000	+	6,000,000	11,635,000	24,000
					-	4,000,000	1,635,000	62,300
2구간	6,440,000	644,000	5,796,000	61,700	+	7,000,000	13,440,000	26,700
					-	4,000,000	2,440,000	70,000
3구간	8,050,000	805,000	7,245,000	77,200	+	9,000,000	17,050,000	32,200
					-	5,000,000	3,050,000	87,600
4구간	10,465,000	1,046,500	9,418,500	100,400	+	12,000,000	22,465,000	40,400
					-	7,000,000	3,465,000	114,900
5구간	12,880,000	1,288,000	11,592,000	123,500	+	14,000,000	26,880,000	53,500
					-	9,000,000	3,880,000	142,200
6구간	14,490,000	1,449,000	13,041,000	139,000	+	16,000,000	30,490,000	59,000
					-	10,000,000	4,490,000	159,800

② 【36A, 36B】 구간별 임대조건

[단위 : 원/월]

구간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10%)	잔금(90%)					
1구간	7,105,000	710,500	6,394,500	68,100	+	8,000,000	15,105,000	28,100
					-	5,000,000	2,105,000	78,500
2구간	8,120,000	812,000	7,308,000	77,900	+	9,000,000	17,120,000	32,900
					-	5,000,000	3,120,000	88,300
3구간	10,150,000	1,015,000	9,135,000	97,300	+	11,000,000	21,150,000	42,300
					-	7,000,000	3,150,000	111,800
4구간	13,195,000	1,319,500	11,875,500	126,600	+	15,000,000	28,195,000	51,600
					-	9,000,000	4,195,000	145,300
5구간	16,240,000	1,624,000	14,616,000	155,800	+	18,000,000	34,240,000	65,800
					-	11,000,000	5,240,000	178,700
6구간	18,270,000	1,827,000	16,443,000	175,300	+	21,000,000	39,270,000	70,300
					-	13,000,000	5,270,000	202,300

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공급일정

신청 구분	공급 대상	신청접수 일정		인터넷 신청자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인터넷	현장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우선 공급	철거민	'23.08.10(목), ~ 08.11(금), 10:00 ~17:00 *기간 내 24시간 가능	'23.08.10(목) ~ 08.11(금) 10:00 ~16:00 *[장소]대구도시개발공사 1층 주거복지처	'23.08.25(금) 17:00 이후 *대구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게시 (dudc.or.kr)	'23.12.08(금) 17:00 [조회방법] *대구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게시 (dudc.or.kr)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대구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별도게시	'23. 12월 중 ※ 당첨자발표 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변동시 대구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별도게시
일반 공급	청년 신혼 부부 · 한부모	'23.08.17(목), ~ 08.18(금), 10:00 ~17:00 *기간 내 24시간 가능	현장접수 미 실시	[서류제출 기간] '23.08.29(화) ~ 09.01(금) (23. 09. 01. 우체국 소인 등기우편까지만 유효)		

- **[신청접수]**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경우에 한하여 아래 **현장접수 기간에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청약신청을 도와드립니다. ※ 현장 신청자께서는 접수신청 시 필요 서류 모두 제출 필수
 - 우선공급 현장접수 : '23.08.10(목) ~'23.08.11(금) 10:00~16: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장소 : 대구도시개발공사 1층 주거복지처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 (고성동3가 1-1))
 - 청약신청서류 : 공급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불가사항확인서, 각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및 기타 해당서류 ※ 7. 신청서류 참고
- **[인터넷 신청자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등기우편
 - 등기우편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 대구도시개발공사 주거복지처 인동촌 통합공공임대 담당자 앞
 - ※ 등기우편은 '23.09.01(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일반우편 접수 불가 및 현장접수 절대 불가★)
- **[당첨자 발표]** 대구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게시판 확인
 - 당첨자 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대구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별도 게시
- **[현장 계약체결 일정]**
 - 추후 당첨자 별도 통보

신청방법

우리공사에서는 고객님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 신청의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 등 불편함이 있으니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객께서는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인터넷 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이후 계약이 진행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www.dudc.or.kr)을 통한 신청이 원칙이나,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합니다.
- 우선공급 대상 중 철거민 등(기존거주자)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하며, 해당 우선공급 접수기간('23.08.10~11)에 접수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자격별(우선공급, 일반공급) 지정된 접수기간 동안에만 가능하며, 취소 및 수정은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각 신청기간 내에만 가능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절차



- 인터넷 청약 접수기간 중 첫날과 마지막날을 제외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격별**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확인하시어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주택] 주택명 : **인동촌 통합공공임대주택**, 주택관리번호 : **2023-980085**

구분	조회방법
인터넷발급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 확인
인터넷이 불가능 한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인터넷 신청자께서는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2023.08.25(금) 17시 이후**에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신청자께서는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등기우편으로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확인방법) 대구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www.dudc.or.kr>) → 배너 『인동촌 통합공공임대 인터넷 신청자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클릭

※ **현장 신청자께서는 접수신청 시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고,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임신, 불법낙태, 입주 전 파양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임신부부 출산 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 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 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4.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8.04) 현재 ①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②자산·소득 기준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따른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을 충족한 자(「5.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 참조)에게 ③1세대 1주택 기준으로 ④세대원수에 따라 공급합니다. 다만,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는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를 통해 미성년자도 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8세의 “청년”계층의 경우 신청 가능)

- ①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자녀가 반드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함)
-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형제자매가 반드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함)
- ③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④ 청년, 예비신혼부부 및 우선공급 대상인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구성원 전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검증(주택소유, 소득, 자산)의 대상이 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청년 계층의 주택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되며,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 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세대구성원의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주택소유가 확인되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하며,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 주택소유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인을 목적으로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됩니다.**

• 주택 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①과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③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 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 ②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③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에 유의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대구도시개발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재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자산보유기준 및 산정방법

■ 자산보유기준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별도로 제정·고시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자산 가액 합계가 아래의 기준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구분	자산보유 기준금액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억 6,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 **청년 계층**의 보유 자산가액은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보유 자산가액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단, 공급대상자중 일부는 자산보유기준을 미적용하며, 자세한 사항은 "5.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하며,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이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산정방법

구분		산정방법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 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예수금 : 예수금 잔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부채는 총자산 산정 시 자산합계 금액에서 차감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기준 및 산정방법

■ 소득기준

- 소득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금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세전 금액으로, 신청자 세대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입주자격 구분별 소득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공급대상별 소득기준금액은 「5.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p.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계층**의 소득금액은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소득금액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 단, 공급대상자중 일부는 소득기준을 미적용하며, 자세한 사항은 “5.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의미하며,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를 포함합니다.
- 소득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하며,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며, 소득항목에 대한 설명 및 자료 출처는 「17.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정방법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1세대 1주택 기준 공급

- 1세대 1주택 신청 · 공급원칙에 따라, **1세대 내에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일반계층 등 다른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을 통해 1세대 내 1주택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부(세대주)+자(세대원)」인 세대에서 **부와 자가 각각 고령자(부), 청년(자)의 자격으로 청약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 **다만, 세대주가 아닌 청년의 경우, 1세대 내에서 세대원인 청년계층이 각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부(세대주) + 형(세대원) + 동생(세대원) → 청년(형), 청년(동생) 각각 신청 가능
- 세대분리와 중복입주 판단 관련하여,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까지 세대를 분리하여야 하고, 우리공사에 주민등록등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다만,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에 해당**하므로 기 거주중인 임대주택을 당해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명도하여야 합니다.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

- 공공임대주택의 과소 · 과밀점유 방지를 통한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의2에 따라, **입주자의 세대구성원 수(태아 포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대원수별 입주 가능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 ※ 단, 해당 주택의 특성(**단지 내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주택 無**)을 감안, 동 규칙 별표5의2 '5.그 밖의 사항' **나목**에 따라 세대원수 미달에 따른 임대료 할증(청약신청 부적격 처리 포함)은 해당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세대원수	공급가능 면적	해당 공급형 ¹⁾
1명	전용면적 30㎡ 이하의 주택을 공급	29A (36A, 36B)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 장애인 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29A, 36A, 36B
2명	전용면적 20㎡ 초과 40㎡ 이하의 주택을 공급	29A, 36A, 36B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 장애인 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29A, 36A, 36B
3명	전용면적 30㎡ 초과 50㎡ 이하의 주택을 공급	36A, 36B
4명 이상	전용면적 40㎡ 초과 주택을 공급	-

- 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 자매 등은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5.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

우선공급

아래의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상에 기재된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대 상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하며,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2호 나목 1) 중 가), 나), 다), 라)(GB해제만 해당, 마), 자), 차)의 경우 소득기준 미적용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제2호 나목 1) 중 가), 나), 다), 라), 마), 자), 차)의 경우 자산보유기준 미적용

일반공급

일반공급 자격 미충족 시 부적격 처리되오니, 반드시 아래의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상에 기재된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대 상																											
청년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8. 4.) 현재, 무주택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이 별표에서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 세대원 총자산가액이 3억6,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일 것																											
	<table><tr><th>주택공급신청자</th><th>가구원수</th><th>월평균소득금액</th><th>기준</th></tr><tr><td rowspan="6">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td><td>1인</td><td>3,532,416원 이하</td><td>170%</td></tr><tr><td>2인</td><td>5,529,848원 이하</td><td>160%</td></tr><tr><td>3인</td><td>6,652,224원 이하</td><td>150%</td></tr><tr><td>4인</td><td>8,101,446원 이하</td><td>150%</td></tr><tr><td>5인</td><td>9,496,032원 이하</td><td>150%</td></tr><tr><td>6인</td><td>10,841,972원 이하</td><td>150%</td></tr><tr><td>세대원 (본인)</td><td>1인</td><td>3,532,416원 이하</td><td>170%</td></tr></table>	주택공급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3,532,416원 이하	170%	2인	5,529,848원 이하	160%	3인	6,652,224원 이하	150%	4인	8,101,446원 이하	150%	5인	9,496,032원 이하	150%	6인	10,841,972원 이하	150%	세대원 (본인)	1인	3,532,416원 이하	170%
	주택공급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3,532,416원 이하	170%																								
		2인	5,529,848원 이하	160%																								
		3인	6,652,224원 이하	150%																								
		4인	8,101,446원 이하	150%																								
		5인	9,496,032원 이하	150%																								
		6인	10,841,972원 이하	150%																								
	세대원 (본인)	1인	3,532,416원 이하	170%																								
※ (유의사항) 세대주가 아닌 청년은 신청자 본인만 가구원수로 인정(“1인”)되며, 주택형도 1인 기준으로만 신청 가능																												
※ 청년 계층의 소득 및 자산은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 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																												
㉡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일 것 (출생일 1983. 8. 5. ~ 2005. 8. 4)																												
㉢ 혼인 중이 아닐 것																												

구 분	대 상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8. 4.)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예비신혼부부의 보유 자산가액은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
	㉞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3)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태아 포함)
	(4) 만 6세 이하 자녀(2017. 8. 4. 이후 출생)를 둔 한부모가족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㉟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일 것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의 합계)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80퍼센트] 이하일 것. 다만,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160퍼센트(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90퍼센트) 이하, 총 자산가액이 3억6,1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이 3,683만원 이하일 것

6. 인터넷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안내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신청자 본인이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결과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3.08.25.(금) 17:00 이후**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 대구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https://www.dudc.or.kr>) → 메인페이지 배너 『인동촌 통합공공임대 인터넷 신청자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클릭

■ 서류제출 기한

- 제출기한 : **‘23.08.29.(화) ~ 09.01.(금)**

■ 서류제출 방법

① 인터넷 신청자 : 서류제출 기한 내 **등기우편**으로만 (**일반우편 불가**) 접수

-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3.09.01.)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발송주소] (41594)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 대구도시개발공사 주거복지처 인동촌 통합공공임대주택 담당자 앞
- **봉투 겉면에 “인동촌 통합공공임대 서류제출”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현장방문 신청자 : 신청과 동시에 필요서류(신청자 신분 확인서류 및 청약신청 구비서류)를 모두 구비해서 현장접수 시 제출

구 분	신청자 신분 확인 서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위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7. 신청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2023.08.04.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8.04)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자는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하며, 현장 신청접수자는 접수시점에 일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표기** 되도록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선정은 모집호수의 일정배수를 선정함에 따라, 일부는 서류제출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후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신청인을 대상으로 입주자격 구분별 당첨자 선정방식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기본 제출서류

구비서류	비 고	부수
【필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양식1)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 시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필수】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2)		1통
【필수】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양식3)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필수】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양식4)	· (작성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확인서에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 ※ (주의) 동의서 미제출 시, 신청·접수가 거부됩니다.	1통

구비서류	비 고	부수
【필수】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우선공급 대상자는 반드시 제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우선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대구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 등본 상 사업지구내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해당자만 제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1통
외국인등록증 사본 *해당자만 제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1통
임신진단서 *해당자만 제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기준 중위소득 대비 소득구간 판정 시,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산정 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우선공급, 신청자 중 배점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신혼부부,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자격으로 주택을 신청하는 신청자 중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해당자만 제출	【아래 해당자만 제출】 주택 신청자 중 중증장애인 자격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1통

■ 유형 구분별 제출서류 (해당하는 유형의 신청자만 제출)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중증장애인인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 추가 발급 필요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중증장애인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신혼부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 중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경우	(필수) 자녀의 기본증명서 (해당자) 입양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	행정복지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해당자) 입양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발급분)	행정복지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입주 시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등 증빙을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공사 양식 (양식5)

■ 임대조건 상한 대상자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국가보훈처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소득인정액 산정결과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수급자 증명서	

※ 서류가 중첩될 경우 1부만 제출하시면 되며, **미제출 시 임대조건 상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8. 입주자 선정방법

① 우선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우선 선정 후, ②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 중 일반공급 심사대상자였던 자를 일반공급 신청자와 경쟁하여 일반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며, ③ 일정비율 규모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공급

- 우선공급 공급대상별 배정호수 내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 시 아래의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① 배점합산 → ② 추첨)
- 단, 장애인의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을 경우, 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배점합산, ③ 추첨 순으로 선정합니다.

배점항목	3점	2점	1점
①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이하	50%초과 70%이하	70%초과 100%이하
② 부양가족 수 (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3인 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대구시) 연속 거주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④ 미성년자녀수 (만19세 미만, 태아포함)	3명 이상	2명	1명
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
⑥ 공사 통합공공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통합공공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통합공공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 입주자모집공고일 속하는 당해연도의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합계액 비율로 산출합니다.
- 부양가족 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 + 신청자의 형제, 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단,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 당해 주택건설지역**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대구시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주택건설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봅니다. (당해지역 거주기간 중 주민등록이 말소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재등록일로부터 계속 거주기간을 산정)
- 미성년자녀수**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함. 이혼·재혼의 경우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 철거민(기존거주자) 등 우선공급 대상의 경우 관련기관의 통보 명단에 따릅니다.
- 우선공급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도 자동 신청되며,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공급형별의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층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에 따른 잔여동·호가 발생하여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에 배정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저층배정 등을 사유로 동호변경은 불가하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동호교체도 불가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공급대상별(청년, 신혼부부 · 한부모가정) 배정호수 내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에 따른 잔여동·호가 발생하여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저층에 배정될 수 있으며, 공동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생활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 · 저층배정 등을 사유로 동호변경은 불가하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동호교체도 불가합니다.

9.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당첨자 발표 **【2023.12.08(금), 17:00】**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대구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https://www.dudc.or.kr>) 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당첨자 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처리 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대구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별도 게시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3배수를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안내

■ 현장계약 **【일정 추후 개별 안내】**

- 계약장소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로 73, 대구도시개발공사 1층 주거복지처 [가능시간 : 10:00 ~ 17:00]
- ※ 전화 : ☎053-350-0300
- 계약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해야 하여야 합니다.**

공통서류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 계약금 (보증금 10%)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 제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중 택1)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 가능)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위임장 (공사양식에 계약자 날인 및 서명)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10. 기타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30년입니다. 다만, 거주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임대료를 할증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거주기간 초과에 따른 할증비율 : 최초 갱신계약시 110%,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20% 누적 적용)
예비입주자 계약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 계층은 동일기간 동안 무주택자이어야 함) 이어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갱신계약이 거절되고,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8.12.11)에 따라 분양권등(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당첨자 발표일 이전에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당첨이 되더라도 계약이 불가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부적격 해제 또는 해지되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 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계약	- 이 주택의 계약자는 거주 중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격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할증된 임대조건이 부과됩니다. (※공고문 14. '갱신 임대조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주택소유의 경우 갱신계약이 거절되고,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청년 또는 신혼부부에 해당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혼인 및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u>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 원칙에 따라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u>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동시신청 하는 경우, 중복 신청에 해당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입주 중에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다만,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 입주 해당

신청 서류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8.04)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배우자는 반드시 신청 당시 제출한 예비배우자이어야 함)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미제출 등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급이 취소되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입주자모집시 제출한 세대원 명단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됩니다.
당첨자발표 관련 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로 서면통보(통합공공임대주택 계약 담당부서) 혹은 유선통보(053-350-0300) 하시기 바랍니다. *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적격 소명 안내, 계약 및 입주안내 등을 받지 못하고 당첨 및 계약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기타사항	• 우리공사에서 제공하는 전화 및 방문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23년 12월이나, 공사 중 천재지변, 무주택·소득·자산조사 지연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예정된 입주 시기에 입주가 불가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 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당첨자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 합니다. * 계약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기타사항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는 경우 보증금 완납 여부 및 입주자 본인 확인 후 세대열쇠를 교부하며,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로 합니다. * 실제 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미납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11. 지구 및 단지여건 등

단지 내부여건

- 본 주택은 콘크리트 구조로서 건물의 뼈대는 철근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대 내·외부의 벽체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시공되어 세대 간 방음에 취약할 수 있음.
- 난방방식은 개별 난방이며, 욕실에는 난방시설이 없음.
- 구조는 철근콘크리트구조임.
- 본 주택의 주차대수는 총 12대 (일반10대, 장애인1대, 경차1대)임.
- 본 주택의 배치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저층 세대에 대한 방법창은 설치되지 않음.
- 인근에 주택이 위치하여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배치상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 세대에는 시설물 작동 시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주변 여건 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제한될 수 있음.
- 본 주택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본 주택 배치 상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 본 주택의 진입도로는 1개로 차량 진출입 운행 시 불편할 수 있음.
- 옥상층은 안전사고 등의 사유로 출입이 불가함.
- 본 주택 모든 세대의 현관 중문은 설치되지 않으며, 승강장 홀 및 복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세대 내부로 일부 전달될 수 있음. 또한 현관 부위에서는 상대적으로 추위나 더위를 느낄 수 있음.
- 승강로 인접 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세대 외부 창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나 주변 환경으로 인해 방충망 격자망보다 작은 곤충이 실내로 들어올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니므로 향후 교체 또는 변경이 불가함.
- 발코니는 난방이 되지 않는 구역이므로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해야 하며, 물청소용 수전(스프레이션)과 세탁기 수전은 사용 후 반드시 수도꼭지를 잠가 동절기 동파로 인한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함. 만약, 사용상 부주의(수도꼭지 미잠금, 창문 개방 등)로 인한 동결 및 동파(누수포함)로 인한 피해(타 세대 포함)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동결 및 동파세대 입주자에게 있음.
- 29형의 주택에는 2구형 가스쿡탑, 36형 주택에는 3구형 가스쿡탑이 설치됨.
- 전기 회로 용량 부족 등의 이유로 인덕션 설치가 불가함.
- 주택 내 전기 공급을 위해 한전 전주가 주택 경계에 위치하므로 인근 세대에 미관상 장애가 될 수 있음.
- 한전으로부터 저압(380/220V)으로 전기를 공급받게 되며, 공용부 전기 기본요금이 한전 전기공급약관에 의해 사용설비의 계약전력량 기준으로 부과되어 세대별 전기요금 부담이 클 수 있음.
- 인터넷은 입주자가 개별로 통신사업자(ISP)에게 가입하여 사용 요금을 직접 납부 하여야함.
- 세대 현관문에는 홈오토와 연동되는 디지털 도어록(일반 핸들형)이 설치됨.
- 도난이나 기물 파손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주택 내 CCTV 설치로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우편·택배보관함은 1층 주출입구 인근에 설치될 예정임.
- 주택 배치의 특성상 주택 내외의 보안등, 가로등과 차량의 소음 및 전조등으로 인해 저층 세대는 사생활 침해, 빛공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본 주택 내 각종 인입(상, 하, 오수, 도시가스, 전력, 통신 등) 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 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수도 요금은 각 세대 사용량(개별검침)과 공용부분 사용량(각 세대별 인원수 비례부과)의 합한 금액으로 부과됨.
- 건물 입구 조정지역에 설치된 부동산은 관계자 외 사용을 금지함.
- 에어컨 설치시 세대 내 지정 위치에 설치할 수 있는 매립박스 또는 슬리브가 시공되어 있어 실내기 설치 위치가 제한됨. 일부 방의 경우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본 주택은 관련법령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가 적용되어 있으나 세대 내부습도가 높고 내·외부 온도차가 큰 실내 환경의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대 내 적절한 환기 조치를 하여야 함.
- 발코니 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본 주택 세대에는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모든 조명등 기구가 LED등 기구로 설치되므로 개인 취향에 따라 눈부심을 느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등 기구의 교체나 변경 시공을 불가함.
- 주방가구, 신발장 등 가구 설치 부위에는 벽체 및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 분배기 및 주위 배관 등이 설치되어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함.
- 세대 내 목문틀 및 시트 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12.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위치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서구 비산동 68-21번지	대구도시개발공사	(주)창명건설 (주)거성전력 대건통신	-	청림건축사사무소

13.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임대조건 상한

「통합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급형·소득구간별 임대조건에도 불구하고, 임대조건 상한 금액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 임대조건 상한 대상 여부는 주거급여 수급여부 및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적용대상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① (가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② (나목)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③ (다목)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④ (라목)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임대조건 상한계산

-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수급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담

주거급여	임대조건 상한
수급 ○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에 입주자가 수령하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전환임대료 범위 내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급 ×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제2호 가목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주거급여법」 제7조 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의미합니다.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전환임대료는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의 소득에 따른 기본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을 환산한 임대료를 의미합니다.
- 임대조건 상한 적용은 공급신청(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및 갱신계약 시점의 입주자 자격여부 및 소득수준 등을 확인하여 해당시점에 한하여 적용하며, 임대차기간 중 소득 및 자격변경 등에 따라 임대조건 변경은 불가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임대조건

- 주거급여 수급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이하인 자(소득구간계수 1~2구간에 해당)”임에 따라, 임대조건 상한에 따른 임대조건은 1~2구간만 안내드립니다. 소득금액 검색결과 소득구간계수가 3구간에 해당하시는 신청자는 임대조건 상한 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29A / 36A, 36B : 기존 임대조건과 동일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임대조건

공급형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계	계약금(10%)	잔금(90%)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29A	3,026,500	302,650	2,723,850	60,200	+	7,000,000	10,026,500	25,200
					-	1,000,000	2,026,500	62,200
36A, 36B	3,791,000	379,100	3,411,900	75,400	+	9,000,000	12,791,000	30,400
					-	1,000,000	2,791,000	77,400

※ 해당 주택 상호전환 조건 : 임대료 → 보증금 전환이율 6%, / 보증금 → 임대료 전환이율 2.5%

14. 갱신 임대조건

기본원칙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자산, 면적기준, 거주기간)을 갖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의 임대조건은 갱신계약 시점의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임차인 세대의 월평균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소득구간계수(0.35~0.9)를 적용하여 산정한 임대조건으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5%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 적용됩니다. 다만, 동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소득 및 자산기준 초과자는 제외하며, 자세한 사항은 「임대조건의 할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산정 방법

- 「갱신시점의 임대시세로 산정한 임대보증금(또는 임대료) 금액」과 「전 회차 임대보증금(또는 임대료)에 인상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합니다.

보 증 금	$MN【\text{갱신시점 시중 전세시세 전 회차 시점의 적용시세} \times \text{임대조건인상률}】 \times \text{갱신 시점의 소득구간계수} \times 35\%$
월임대료	$MN【\text{갱신시점 시중 전세시세 전 회차 시점의 적용시세} \times \text{임대조건인상률}】 \times \text{갱신 시점의 소득구간계수} \times 65\% \times \text{시장전환율} \div 12$

- 시장전환율은 실제 해당지역에서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을 말합니다.

- (예시) 시중시세 6% 이상 증가 + 입주자 소득변동으로 소득구간 계수가 변경(2→3→1구간)되는 경우

[단위 : 원]

구분	① 시중 전세시세	② 갱신 시 인상한도 (임대조건 인상을 5%가정)	적용시세 (MN [① ②])	소득구간 별 계수	임대조건 (시장전환율 6.2% 가정)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최초계약	58,000,000	-	58,000,000	(1구간) 0.35	7,105,000	68,100
				(2구간) 0.40	8,120,000	77,900
				(3구간) 0.50	10,150,000	97,300
				(4구간) 0.65	13,195,000	126,600
				(5구간) 0.80	16,240,000	155,800
				(6구간) 0.90	18,270,000	175,300
1차 갱신계약	61,480,000	60,900,000	60,900,000	(1구간) 0.35	7,460,200	71,500
				(2구간) 0.40	8,526,000	81,800
				(3구간) 0.50	10,657,500	102,200
				(4구간) 0.65	13,854,700	132,900
				(5구간) 0.80	17,052,000	163,600
				(6구간) 0.90	19,183,500	184,000
2차 갱신계약	65,168,800	63,945,000	63,945,000	(1구간) 0.35	7,833,200	75,100
				(2구간) 0.40	8,952,300	85,800
				(3구간) 0.50	11,190,300	107,300
				(4구간) 0.65	14,547,400	139,500
				(5구간) 0.80	17,904,600	171,700
				(6구간) 0.90	20,142,600	193,200

- 소득(6구간=중위소득 150%), 자산, 거주기간 초과자는 갱신 임대조건에 할증이 부과되며, 자세한 사항은 「임대조건의 할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조건의 할증

입주자격을 갖추고 입주하였으나, **갱신계약 시(세대원수별 면적기준은 최초계약 시에도 적용) 입주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차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할증된 임대조건이 부과(①~④)됩니다.** 할증이 두 개 이상의 항목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 할증조건

① 소득기준 초과

- 갱신계약 시 **소득기준(6구간,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을 초과한 경우**, 소득구간계수 0.9(6구간)을 적용한 갱신 계약 시 임대조건에 소득기준 초과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p 이하	105%	110%
	10%p 초과 30%p 이하	110%	120%
	30%p 초과	115%	130%

※ 30%p 초과 구간을 적용받는 사람은 해당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할증비율에 최초 갱신 시 10%p, 2회차 갱신 시 20%p를 더하여 할증하고 3회차 이상부터는 직전 적용받았던 할증비율에 10%p씩 계속 가산 할증됩니다.

② 자산기준 초과

- 갱신계약 시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에 130%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합니다.
- ※ 해당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갱신 시 10%p, 2회차 이상부터는 직전 적용받았던 할증비율에 10%p씩 계속 가산하여 할증됩니다.

③ 세대원수별 면적기준 초과

- 인동촌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단지 내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주택이 없으며**, 세대원수별 면적 기준을 2명 이상 초과하는 주택을 선택할 수 없으므로 세대원수 미달에 따른 임대료 할증은 적용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④ 최대 거주기간(30년) 초과

- 갱신계약 시, 입주자격을 갖추었으나, **최대 거주기간(30년)을 초과한 세대**에 대한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에 다음과 같은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합니다.

거주기간 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시	거주기간 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10%	120%

■ 할증조건 중 중복적용 시

- 임대조건 할증조건(①~④)이 중복되는 입주자에 대한 갱신계약 시, 갱신 임대조건에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합니다.
- (예시) 청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대비 170%, 자산 5억원, 공급면적 59㎡, 최대거주기간 초과 거주 최초 갱신계약 시

① 소득기준(*)	② 자산기준	③ 면적기준	④ 거주기간	최종 할증률
110%	130%	105%	110%	130%

(*)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대비 20%p 초과 / 자산기준 361백만원 초과 / 면적기준 40㎡ 초과 / 30년 초과

■ 할증조건 예외대상

임대조건 할증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대상에 해당하는 입주자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의2 및 국토교통부 고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할증(소득, 자산, 면적기준 초과에 한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칙 및 고시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예외대상	할증 적용여부		
	① 소득기준 초과	② 자산기준 초과	③ 면적기준 초과
【철거민 등】 시행규칙 별표5의2 제2호 나목의 1)			
가) 공공주택건설사업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적용	미적용	미적용
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주택의 세입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 포함)	적용	미적용	미적용
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적용	미적용	미적용
라-1) 공공사업 중 非GB해제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적용	미적용	미적용

예외대상		할증 적용여부		
		① 소득기준 초과	② 자산기준 초과	③ 면적기준 초과
라-2)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개발 또는 도시개발사업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마) 산업단지개발사업 주택의 세입자		적용	미적용	미적용
자)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적용	미적용	미적용
차) 공익사업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적용	미적용	미적용
【공통사항】 세대원수 감소로 인한 공급기준 면적 초과 시 해당 세대원수 공급면적의 주택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모든 입주자격 구분별		-	-	미적용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별표5의2(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를 초과하더라도 입주자격 구분별 소득구간 상한까지는 소득기준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급대상	신청자격	임대조건
청년	① 가구원 수가 1명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170% 이하인 자 ② 가구원 수가 2명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160% 이하인 자	6구간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① 가구원 수가 3명 이상이고 본인 및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상대방)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180% 이하인 자 ② 가구원 수가 2명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초과 160% 이하인 자 단, 본인 및 배우자(혼인할 상대방)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160% 초과 190% 이하인 자로 한다.	

- 세대원수 감소로 인한 공급기준 면적 초과 시 해당 세대원수 공급면적의 주택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면적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을 적용하지 않음

15. 편의시설 설치 안내

주거약자용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 주거약자 및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설치되어있는 편의시설은 아래와 같으며 추가 시설은 설치가 불가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항목

구 분		설치내용	제공대상
기본설치 품목	현관	동작 감지센서가 부착된 등	기본제공
		장애인 손잡이 (I형 1개)	
	욕실	폭 80cm이상 출입문 설치 (개폐방향 밖여닫이)	
		장애인 손잡이 (L형 1개, I형 2개)	
		위아래 이동 가능한 샤워기 설치	
		접이식 의자 설치	

16.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 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지방세정 자료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 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 차적정보

17.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삭제 <2022. 9. 6.>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삭제 <2022. 9. 6.>

라. 척추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마.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5)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생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아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 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 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5)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또는 기면증으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 증상이 심한 경우로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 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 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 2)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에 백반증(白斑症)이 있는 사람
- 3) 노출된 안면부의 30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두 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7. 장애 정도 구분의 하한 기준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의 기준은 각각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하한 기준으로 한다.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임대문의 · 대구도시개발공사 콜센터 : 053-350-0300

신청
접수

인터넷

대구도시개발공사 홈페이지 (<https://www.dudc.or.kr>) → 청약신청 배너

[대구도시개발공사 1층 주거복지처 (대구 북구 침산로73)]

현장접수처
(주소 및 약도)



2023. 8. 4.

